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122호 | 2016년 2월 15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

박지영*

1. 들어가며

우리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노후대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노후복지정책으로 인해 많은 노령인구가 아직 자녀에 의한 부양에 노후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과 관련하여 최근 효도 각서를 쓰고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¹⁾이 화제가 되는 등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부양의무 해태(懈怠)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및 그 한계

(1)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현행법에 따른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는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의 해제와 제561조에 따른 부담부(負擔附) 증여²⁾의 해제를 들 수 있다.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증자(受贈者)가 증여자(贈與者)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하고, 그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민법」 제556조제2항 및 제558조). 즉,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61조에 따르면,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

1)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 부담부 증여의 해제에 관한 판결

2) 상대방이 있는 증여,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함.

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2) 한계

「민법」에서는 부양의무 해태에 관하여 증여의 해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해제권 행사는 그 요건과 효과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부양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하는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 해제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부양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한 증여 해제의 대부분의 사례가 증여계약이 이행된 후에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5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여의 해제는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으나 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를 결국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증여를 한 부모)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그러나 「민법」상 증여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제554조)에서 부담부 증여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상속인에게 상속상 이익을 주는 제도(기여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상속상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3. 해외 입법례

(1) 증여 해제 관련 입법례

가.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근친에 대한 현저한 비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망은(忘恩)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0조). 다만,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한 경우 또는 철회권자가 그 권리의 요건 발생을 안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고, 수증자의 사망 후에는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제532조). 증여가 철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31조제2항)³⁾.

나.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에 생전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55조). 다만, 망은을 이유로 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행위로 주장하는 비행이 있던 날 또는 증여자가 비행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하여야 한다(제957조). 망은을 이유로 한 철회는 수증자에 의하여 행해진 양도 및 증여물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그 밖의 물권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증자는 철회 청구 당시의 양도물의 가액과 청구일 이후의 과실을 반환

3) 선의수익자의 경우 현존이익에 한정됨(독일 민법 제818조제3항)

하여야 한다(제958조).

다.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친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친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 현실증여, 이행된 증여, 증여의 약속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9조 및 제250조). 다만, 철회는 증여자가 철회사유를 안 날부터 1년 내에 할 수 있다(제251조). 증여자는 현실증여 및 이행된 증여를 철회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증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49조).

(2) 상속 관련 입법례

가. 러시아

러시아 민법에서는 법정상속 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부양에 관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 이행을 악의로 회피한 공민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117조제2항).⁴⁾

나. 중국

중국 계승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유기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상속권을 상대적으로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⁵⁾

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子) 사이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는 정황상 피상속인이 그 자를 용서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다(제540조).⁶⁾

마.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친족 중 누군가를 또는 배우자를 법정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38조).⁷⁾

바. 일본

일본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가진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자)이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이에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폐제(廢除)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89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도 추정상속인을 폐제할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제893조).

4. 시사점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증여자에 대한 중대한 망은행위, 부양의 거절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증여의 해제를 통하여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시키는 방법(독일, 프랑스, 스위스)과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회피, 유기, 현저한 비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박도희, 「부모부양에 대한 제고 : 민법상 부모 부양 의무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한양법학』 제22집, 2008, p. 262

5) 김유은,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 36

6) 김유은, 앞의 논문 p. 60

7) 배제에는 어떤 이유도 요구되지 않지만 배제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배제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함(김유은, 앞의 논문 p. 153).

이를 재산상속과 연계하여 상속결격사유로 법정(러시아, 중국, 오스트리아)하거나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독일, 일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증여의 해제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해제권의 행사기간 역시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556조제2항 및 제558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증여의 해제가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실효적 제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외 입법례와 같이 증여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⁸⁾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⁹⁾

상속과 관련된 해외 입법례의 경우에 부양의무와 상속을 연계하여 부양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부양의무 이행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달리 부양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상의 제재(법률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자격 박탈)를 가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여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8)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반환 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할 것인지(독일, 스위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게 할 것인지(프랑스)에 대한 검토와 제3자의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증여의 해제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 3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정수성 의원, 민병두의원, 서영교의원).

시간, 비용 소요 등의 부담 없이 부양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상속상의 제재를 줄 수 있는 외국의 입법례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5. 나가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그 부담은 결국 국가와 사회가 떠안게 되고, 고령화사회가 가속될수록 그 부담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노령인구의 부양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현 제도는 증여 해제의 효력 측면에서나 상속과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나 상속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입법례와 같이 증여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법률 또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자격 박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10) 상속결격과 관련하여 19대 국회에 1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박인숙 의원).